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당원참여예산기구 신설 등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8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당원참여예산기구 신설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
5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당원참여예산기구 신설 등(안 제33조의2 등)

개정안은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 등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장의2 정당 예산과정의 당원참여</u> <u>제도 및 예산기구 운영</u>
<u><신설></u>	<u>제33조의2(정당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u> 정당은 그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장에서 “당원참여예산제도”라 한다)와 제33조의3에 따른 당원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u><신설></u>	<u>제33조의3(당원참여예산기구)</u> ① 정당은 제33조의2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와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이하 이 조에서 “당원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당원참여예산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u><신 설></u> <u><신 설></u>	1. <u>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 2. <u>제33조의4에 따라 정당의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당원의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원참여예산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33조의4(정당 예산안의 당원 의견서) 정당의 예산안에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당원의 의견서가 포함되어야 한다.</u> <u>제33조의5(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당의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당원참여예산제도는 정당 재정에 대한 당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정당의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정당의 존립¹⁾과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²⁾ 정당의 회계처리 절차 등은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³⁾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정당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의 예산을 정당의 자율에 맡기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과정에 당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당원참여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당원참여예산제도와 그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할

1)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2)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것을 의무화하면서 제33조의3에서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임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도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정당의 조직·기구에 대한 사항은 정당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